

# 모태펀드 (문체부 등)

##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3년도 모태펀드(문체부 등)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1,965억원 내외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li> <li>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li> <li>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li> <li>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li> <li>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li> <li>·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참조</li> <li>· 조합 성격 및 공고문 주목적 투자대상 등에 따라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을 준용</li> </ul>
출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li> <li>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li> <li>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2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li> </ul>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23년 4월 7일(금),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시한 : 3개월 이내</li> <li>·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li> </ul>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sup>주2)</sup>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200	400 <sup>주1)</sup>	50%	2개	100	·벤처투자조합
스포츠	스포츠출발 <sup>주3)</sup>	56	80 <sup>주1)</sup>	70%	2개	28	
	스포츠산업	119	170	70%	1개	119	·벤처투자조합
관광	관광기업육성	300	430 <sup>주1)</sup>	70%	2개	15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과기정통	메타버스	240	400	60%	1개	240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뉴스페이스	50	100	50%	1개	50	
	공공기술사업화 <sup>주4)</sup>	70	100 <sup>주1)</sup>	70%	2개	35	·벤처투자조합
환경	미래환경산업	500	715	70%	1개	500	·벤처투자조합
국토혁신	국토교통혁신 (일반)	150	250	60%	1개	15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해양	해양신산업	130	186	70%	1개	130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중진(고용)	사회적기업	50	70	72%	-	-	
중진(복지)	사회서비스	100	140	72%	1개	100	·벤처투자조합
합 계		1,965	3,041	-	-	-	

주1) 각 자조합의 최소 결성예정액은 중저예산 한국영화 200억원, 스포츠출발 40억원, 관광기업육성 215억원, 공공기술사업화 50억원임

주2) 선정운용사 수가 지정된 분야는 출자요청액을 자조합별 최대출자액에 맞추어야 함

주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만 신청 가능(단,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 겸업 창업기획자는 제외)

주4)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만 신청 가능(단, 창업기획자 중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운용사는 제외)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해당분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관광	관광 기업 육성	<p>○ 관광관련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5% 이상을 투자하되, 코로나19 피해** 관광관련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5% 이상 투자,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5% 이상 투자(업체당 총 투자액 10억원 이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에 약정총액의 10%이상 투자하여야 함</p> <p>* 관광 관련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li> <li>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li> <li>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li> <li>④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 벤처기업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 및 프로젝트</li> <li>⑤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구 창조관광기업)</li> </ol> <p>**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중 하나 이상이 20년~22년에 '19년도 말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은 해당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며, 3개년 중 1년이라도 해당하면 인정)</p> <p>***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란, 최초 투자 당시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p> <p>**** 한국관광공사 시행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 선정 기업,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 선정 기업</p>
과기 정통	메타버스	<p>○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mp;A***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p> <p>* XR(가상융합기술), 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p> <p>**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 주요 기반기술로 주 사업을 영위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출시하거나 메타버스 주요 기반기술 관련 설비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메타버스 주요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기업</p> <p>*** M&amp;A 목적 투자 인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이 M&amp;A(기업 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자금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업(인수기업)에 투자된 조합 투자금은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에만 사용</li> </ul> </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최대주주(최소 20% 이상)가 되거나</li> <li>▶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인수 후 등기이사 과반수 선임 또는 대표이사 선임</li> <li>※ 자펀드는 피인수기업 사외이사(등기임원) 1인 선임 가능</li> </u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기업이어야 함</li> <li>3) 구주투자를 통한 M&amp;A는 약정총액 30%이내에서 인정</li> </ol>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뉴 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산업* 및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li> <li>* 발사체, 위성 등 우주기기의 제작 및 운용, 우주관련 정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업</li> </ul>
	공공기술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술 사업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①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li> <li>① 공공연구기관<sup>주1)</sup>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투자시점 이전 3년 이내 기술이전, 출자, 양도 등을 통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거나,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확보 예정*인 경우</li> <li>* 투자 후 3개월 내 확보 실패 시 의무투자 달성금액에서 제외</li> <li>②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sup>주2)</sup>을 수행하여 투자시점 이전 3년 이내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 혹은 투자 후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sup>주2)</sup>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는 기업**</li> <li>** 투자 후 2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의무투자 달성금액에서 제외</li> <li>③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sup>주2)</sup>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해당 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p> <p>주2)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어야 함)</p> </div>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환경	미래 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①에 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li> <li>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간 환경산업 또는 미래환경산업 분야 매출액의 합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기업</li> <li>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 등 미래환경산업 영위 기업 (아래의 &lt;미래환경산업(예시)&gt; 참고)</li> </ul> </li> <li>* 단,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투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2년간 환경산업 또는 미래환경산업 분야 매출액의 합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도 포함</li> </ul>				
		<p>&lt;미래환경산업(예시)&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미래 환경 산업</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5 대 핵심 녹색 분야</td> <td>           아래의 각 목에 대한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기술개발 또는 서비스            가. 청정대기산업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나. 생물소재산업 : 유용생물자원의 상품화 등            다. 수열에너지 : 수열을 활용한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 등            라. 폐배터리 : 전기차 폐배터리 등 안전한 해체·재활용·재이용 등            마.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너지화 등(다회용기 제조 또는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산업 포함)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기 녹색 분야</td> <td>           5대 핵심 녹색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미래환경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 - 환경창업대전, 에코스타트업, 녹색분야 유망기업, 우수환경기업, 녹색 혁신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선 발하는 기업         </td> </tr> </table>	미래 환경 산업	5 대 핵심 녹색 분야	아래의 각 목에 대한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기술개발 또는 서비스 가. 청정대기산업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나. 생물소재산업 : 유용생물자원의 상품화 등 다. 수열에너지 : 수열을 활용한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 등 라. 폐배터리 : 전기차 폐배터리 등 안전한 해체·재활용·재이용 등 마.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너지화 등(다회용기 제조 또는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산업 포함)	
미래 환경 산업	5 대 핵심 녹색 분야	아래의 각 목에 대한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기술개발 또는 서비스 가. 청정대기산업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나. 생물소재산업 : 유용생물자원의 상품화 등 다. 수열에너지 : 수열을 활용한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 등 라. 폐배터리 : 전기차 폐배터리 등 안전한 해체·재활용·재이용 등 마.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너지화 등(다회용기 제조 또는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산업 포함)				
	초기 녹색 분야	5대 핵심 녹색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미래환경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 - 환경창업대전, 에코스타트업, 녹색분야 유망기업, 우수환경기업, 녹색 혁신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선 발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li> </ul>				
국토 혁신	국토교 통혁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서 국토교통 분야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li> <li>* 국토·토지·주택·도시·건축·건설·교통·도로·철도·항공·물류 등 인프라, 공간과 관련된 일체의 산업</li> <li>**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과학기술</li> <li>※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운수사업 제외</li> </ul>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해양	해양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해양 신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해양수산업(다만, 동법 제3조 제3호 가목 등 수산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하며, 조선산업은 포함한다.)</li> <li>** 기존 해양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동 분야와 연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예시: 육상 바이오 기업에서 해상 바이오 기업으로 확대 등)</li> <li>①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 해양레저관광, 친환경·첨단선박, 해양에너지·자원 등*</li> <li>*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2.12)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대상 분야 등</li> <li>②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 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li> <li>*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li> </ul>
중진 (고용)	사회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함</li> <li>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li> <li>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li> <li>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li> <li>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li> <li>⑤ 2020.01.01.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li> <li>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li> </ul>
중진 (복지)	사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 기간 내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단,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li> <li>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li> <li>*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이하 같음)</li> <li>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li> </ul>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lt;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분야(예시) &gt;</p> <p>① 새로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②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컨텐츠 제공            ③ 통합(융합)서비스 제공            ④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장비개발            ⑤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컨설팅·정보제공            ①~⑤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기업</p> <hr/> <p>※ 운용사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 기준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주목적 대상 적합 여부는 사회서비스 민간 자문단 심의회에서 평가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은 추후 통보 예정)</p>

주1)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항 목	증저예산 한국영화
계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의 자산은 조합 계좌 내 회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li> <li>* 증예산 / 증저예산 / 저예산 / 일반 한국영화 / 한국영화 프로젝트 외 영상물 프로젝트로 분리</li> </ul>
투자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업의 회계와 구분되는 프로젝트 별도계좌로 투자하여야 함</li> <li>- 투심위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및 영화인 신문고 기준)</li> <l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순제작비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단, 근로기준법 개정 및 표준계약서 변경 시 개정된 법률 및 변경된 표준계약서를 따름</li> <li>- 투자제작계약서상 스태프 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의무 삽입</li> </ul>
한국영화 영화관 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하지 못한 작품에 대한 투자는 한국영화 프로젝트 투자로 불인정</li> <li>* 실질개봉 : 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영화는 상영회차 미적용</li> </ul>

항 목	증저예산 한국영화
<p>영화투자·배급·상 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메인투자배급하는 작품에 대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목적 투자 대상 중 증예산, 증저예산, 저예산 한국영화로 인정하지 않음(단,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인정)</li> </ul>
<p>주요출자자 관련 영화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출자자가 제작한 영화는 투자 금지</li> <li>-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 또는 배급하는 영화 프로젝트 투자한도는 조합의 한국 영화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40% 이내로 제한</li> </ul>
<p>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20%</li> <li>-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10%</li> <li>* 단,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조합원 전원 동의로 조정 가능</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목적 투자 대상은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li> <li>- 한국벤처투자가 수집한 조합운용 및 투자결과 정보와 자료는 영화계정 출자자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공</li> <li>- 상기 투자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를 삭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li> <li>- 피투자 작품 상영본 크레디트에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지원 사실을 영화진흥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li> <li>- 영화진흥위원회가 시행하는 각종 비즈매칭 행사 참여를 권고함</li> </ul>

####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li> <li>*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li> </ul>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투자(납입)기간 및 존속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분 야</th> <th>투자(납입)기간</th> <th>존속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영화</td> <td>중저예산 한국영화</td> <td>4년</td> <td>6년</td> </tr> <tr> <td rowspan="2">스포츠</td> <td>스포츠출발</td> <td rowspan="2">2년 이상 4년 이내</td> <td rowspan="2">5년 이상 8년 이내</td> </tr> <tr> <td>스포츠산업</td> </tr> <tr> <td>관광</td> <td>관광기업육성</td> <td>4년 이상</td> <td>8년</td> </tr> <tr> <td rowspan="3">과기정통*</td> <td>메타버스</td> <td>4년 이내</td> <td>8년</td> </tr> <tr> <td>뉴스페이스</td> <td>5년 이내</td> <td>10년 이상</td> </tr> <tr> <td>공공기술사업화</td> <td>4년 이내</td> <td>8년 이상</td> </tr> <tr> <td>환경</td> <td>미래환경산업</td> <td>2년 이상</td> <td>5년 이상</td> </tr> <tr> <td>국토혁신</td> <td>국토교통혁신(일반)</td> <td>4년 이내</td> <td>8년 이상</td> </tr> <tr> <td>해양</td> <td>해양신산업</td> <td>2년 이상</td> <td>8년</td> </tr> <tr> <td>중진(고용)</td> <td>사회적기업</td> <td>4년</td> <td>8년</td> </tr> <tr> <td>중진(복지)</td> <td>사회서비스 기업</td> <td>4년</td> <td>8년</td> </tr> </tbody> </table> <p>* 과기정통계정의 경우 투자기간과 납입기간 중 투자기간으로만 제안 가능</p>	분 야		투자(납입)기간	존속기간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4년	6년	스포츠	스포츠출발	2년 이상 4년 이내	5년 이상 8년 이내	스포츠산업	관광	관광기업육성	4년 이상	8년	과기정통*	메타버스	4년 이내	8년	뉴스페이스	5년 이내	10년 이상	공공기술사업화	4년 이내	8년 이상	환경	미래환경산업	2년 이상	5년 이상	국토혁신	국토교통혁신(일반)	4년 이내	8년 이상	해양	해양신산업	2년 이상	8년	중진(고용)	사회적기업	4년	8년	중진(복지)	사회서비스 기업	4년	8년
분 야		투자(납입)기간	존속기간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4년	6년																																													
스포츠	스포츠출발	2년 이상 4년 이내	5년 이상 8년 이내																																													
	스포츠산업																																															
관광	관광기업육성	4년 이상	8년																																													
과기정통*	메타버스	4년 이내	8년																																													
	뉴스페이스	5년 이내	10년 이상																																													
	공공기술사업화	4년 이내	8년 이상																																													
환경	미래환경산업	2년 이상	5년 이상																																													
국토혁신	국토교통혁신(일반)	4년 이내	8년 이상																																													
해양	해양신산업	2년 이상	8년																																													
중진(고용)	사회적기업	4년	8년																																													
중진(복지)	사회서비스 기업	4년	8년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조합 약정총액×1%)</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li>※ 중진(고용)계정의 경우 2.5%로 적용</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계정(공공기술사업화), 해양계정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ul> </li> </ul>																																															

항 목	내 용																						
<b>기준수익률</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수익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토혁신계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광계정, 환경계정, 과기정통계정, 중진(고용)계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진(복지)계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화계정, 스포츠계정, 해양계정</td> </tr> </tbody> </table>	기준수익률	분야	5% 이상	국토혁신계정	3% 이상	관광계정, 환경계정, 과기정통계정, 중진(고용)계정	2.5% 이상	중진(복지)계정	2% 이상	영화계정, 스포츠계정, 해양계정												
	기준수익률	분야																					
	5% 이상	국토혁신계정																					
	3% 이상	관광계정, 환경계정, 과기정통계정, 중진(고용)계정																					
	2.5% 이상	중진(복지)계정																					
2% 이상	영화계정, 스포츠계정, 해양계정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하며,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를 결정																							
<b>성과보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li> <li>- 단, 중진(고용)계정의 경우 25%, 영화계정의 경우 30% 이내</li> </ul>																						
<b>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환경계정, 해양계정, 중진(고용)계정, 중진(복지)계정 제외)</li> <li>-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조정 전</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조정</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조정 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관리 보수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과 보수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리 보수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과 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body> </table>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b>수탁회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중 수탁회사를 선정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 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b>회계감사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li> </ul>																						
<b>전자보고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원 활용 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 세부 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li>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li> <li>○ 개별조합 내 관리보수, 성과보수 요율은 단일요율을 적용. 단,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은 가능</li>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ul>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b>민간출자자 인센티브</b>	<p>○ 중진(복지)계정 신청 운용사는 아래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아래의 민간출자자 제외대상은 해당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주목적 투자대상을 부여한 유한책임조합원</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li> <li>- 정부·지자체 및 그 자금을 활용하여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곳</li> <li>- 정책자금 출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li> </ul>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적용조건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p> </td> </tr> </tbody> </table> <p>※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p>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p>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li> <li>○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li> </ul> <p>*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p>									
<b>업무집행 조합원 인센티브</b>	<p>○ 운용사는 다음 별도의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p>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별도 인센티브는 모태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토교통혁신계정 국토교통혁신(일반) 분야의 경우 모태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령할 초과수익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중복신청 가능(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p> <p>○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b>&lt;스포츠계정&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서</th> <th style="width: 50%;">적용조건</th> <th style="width: 4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적달성</td> <td>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약정총액의 7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기투자</td> <td>투자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body> </table>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약정총액의 7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조기투자	투자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약정총액의 7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조기투자	투자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항 목	내 용	
	<b>&lt;관광계정&gt;</b>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b>&lt;과기정통계정 메타버스 분야&gt;</b>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목적달성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M&A에 투자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b>&lt;과기정통계정 공공기술사업화 분야&gt;</b>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후속투자	조합이 기업에 최초투자*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투자유치 실적이 조합 결성총액 대비 ① 25% 이상 달성한 경우 ② 50% 이상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과거 기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에 조합이 처음 투자한 것을 의미하며, 개인(엔젤)투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최초투자자로 인정	

항 목	내 용	
	<b>&lt;환경계정&gt;</b>	
	순서	적용조건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추가성과보수율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목적달성	펀드 등록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총액의 7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신주 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추가성과보수율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b>&lt;국토교통혁신(일반) 분야&gt;</b>	
	순서	적용조건
	투자실적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지역소재	국토교통부 대표 균형발전 사업지역내*에 소재한 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성과보수율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행복도시법」에 따른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b>&lt;해양계정&gt;</b>	
	순서	적용조건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추가성과보수율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항 목	내 용	
	<b>&lt;중진(고용)계정&gt;</b>	
	순서	적용조건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자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① 30%이상 ② 50%이상 ③ 70%이상일 경우
	지방투자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이상일 경우
		추가성과보수율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이내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이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b>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b>	○ 운용사는 아래의 투자연계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b>&lt;연차별 투자목표비율&gt;</b>		
	구분	~ 등록 후 만 1년	~ 등록 후 만 2년
	비율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구분	내용	
	추가 관리보수 지급	○ 기준 시점별 투자목표금액의 초과달성분의 1%를 추가 관리보수로 지급 * 추가관리보수 금액은 모태펀드가 부담 ※ 스포츠계정, 과기정통계정(메타버스분야) 제외	
기준수익률 하향	○ 기준 시점 투자목표비율을 1회 이상 달성한 조합 대상,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 0.5%p 하향 적용(단, 투자목표비율을 2회 이상 달성하더라도 기준수익률은 0.5%p 초과하여 하향 불가) ※ 중진(고용)계정 제외		
기타 우대사항	○ 금번 선정 조합이 조합 등록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출자 약정액 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할 경우, 비율 충족 이후 시행하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우대 가점 부여(자조합 당 1회 限) * 선정 우대 기한 등 세부 기준은 투자목표비율 달성 조합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 인센티브 산정 관련 기준수익률은 펀드 전체의 기준수익률을 적용

## 6. 기타 사항

- 운용사별 동일분야 중복지원 불가
- 기 결성·운용중인 펀드의 추가 증액으로 결성하는 방식(Multi-Closing)으로 신청 불가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펀드 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4. 주요출자조건’의 성과보수와 ‘5.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성과보수와 인센티브의 총계는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50%를 한도로 함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 (1)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구분	상세내용	영화	스포츠	관광	과기정통			환경	국토혁신	해양	중진(고용)	중진(복지)
					메타버스	공공기술	뉴스페이스					
LP 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	○	○	○	○	○	○	○
출자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일정비율**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반올림/올림 하지 않은 비율 적용 ** 중진(고용) 경우 10%p, 나머지 5%p	○	○	○	○	○	○	○	○	○	○	○
조기 결성	운용사 선정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결성 하는 경우 * 스포츠, 환경 2개월, 메타버스 3개월		○		○		○					
투자 제안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	○		○	
	최종 선정 시,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3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					
지방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지방 투자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 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 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							○	
기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 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 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 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		

\*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고 해당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제사항이 적용됨(세부내용 3. 제제사항 참고)

## (2)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 적용안내

- 대상: '22년 이후 선정조합 중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모태 자펀드 운용사
- 내용: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에 따라 조합등록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출자 약정액 총액의 40% 이상 투자 한 자조합 운용사에게 1차 심의에서 가점 부여
- \* 신청사는 해당 투자 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제안서 양식 참조)

##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2022년 12월 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②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선정배제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자조합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자조합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출자 신청한 경우 제외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 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 (3)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출자심의회에서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의 겸직 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 겸직 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3. 제재 사항

- 자조합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1차 결성시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연장된 결성 시한일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취소로 인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자진철회일 또는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단,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하고, 결성 시점에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보다 10% 이상 증가된 규모로 결성하는 경우 또는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의 축소로 인해 출자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
- 선정 조합 중 조기결성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일이 해당 조기결성 확약일보다 늦어진 경우, 해당 기간만큼 관리보수 삭감 및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관리보수 삭감 세부 적용방법은 결성총회에서 정함
- 선정 조합 중 투자제안(뉴스페이스 분야)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해당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리보수 삭감 및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관리보수 삭감 세부 적용방법은 결성총회에서 정함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3. 04. 3.(월)10:00부터 '23. 04. 7.(금)14:00까지	제안서 접수(온라인)	-
선정	'23.5월(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 Ⅳ. 지원 방법 및 질의응답

구분	내용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li> <li>*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px;"> <a href="http://install.kvic.or.kr">http://install.kvic.or.kr</a> </div>

- \*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출자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23.03.20.(월)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 상기일정은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 Ⅴ.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 또는 이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결과에 따라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진행

## VI. 문의 방법

- 영화계정 관련 문의: 02-2156-2189, fof@kvic.or.kr
- 스포츠계정 관련 문의 : 02-2156-2232, fof@kvic.or.kr
- 관광계정 관련 문의 : 02-2156-2189, fof@kvic.or.kr
- 과기정통(메타버스)계정 관련 문의 : 02-2156-2076, fof@kvic.or.kr
- 과기정통(뉴스페이스)계정 관련 문의 : 02-2156-2058, fof@kvic.or.kr
- 과기정통(공공기술)계정 관련 문의 : 02-2156-2058, fof@kvic.or.kr
- 환경계정 관련 문의 : 02-2156-2240, fof@kvic.or.kr
- 국토혁신계정 관련 문의 : 02-2156-2179, fof@kvic.or.kr
- 해양계정 관련 문의 : 02-2156-2184, fof@kvic.or.kr
- 중진(고용)계정 관련 문의 : 02-2156-2017, fof@kvic.or.kr
- 중진(복지)계정 관련 문의 : 02-2156-2169, fof@kvic.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3. 03. 21.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별첨 2〉

##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조기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

〈별첨 3〉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스포츠출발, 공공기술사업화]**

분류	주요 평가항목
투자집행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역량
사후관리, 밸류업	후속투자 유치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회수(EXIT) 성과
엑셀러레이팅	운용사의 엑셀러레이팅 역량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스포츠출발, 공공기술사업화]**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결성 가능성	출자자 적정성, 민간 출자자 모집 역량 등
투자역량	제안펀드 투자 전략 및 경험, 운용사 및 운용인력 투자실적 등
사후관리, 밸류업	사후관리 프로세스, 후속투자 유치 사례 및 역량, 밸류업 사례
수익률	수익 창출 사례, 회수 전략 등
엑셀러레이팅	운용사의 엑셀러레이팅 역량, 전문 서비스 기업 등*과의 공동 창업기업 투자·보육·육성 역량** 등 * IP서비스 제공·지원 역량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 포함 ** 공공기술사업화만 해당

# 출자확약서

## 한국벤처투자 귀중

당사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 0000년 00월 00일 출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칭)경북대학교-제이엔피글로벌 공공기술사업화 벤처투자조합 제1호(업무집행조합원 : (주)제이엔피글로벌,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의 출자자로 다음과 같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1. 조합명: 경북대학교 - 제이엔피글로벌 공공기술사업화 벤처투자조합 제1호
2. 출자금액:
3. 출자시기: 조합 선정 후, 2개월 이내
4. 관할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0000년 0월 00일

출자자(법인/개인)

(인)